

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0. 12. 10.(금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
이경자 부위원장

송도균 위 원

형태근 위 원

양문석 위 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가. 서면결의 사유

-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제1호에 의거, 제2009-30차 전원회의(2009. 7. 9), 제2010-1차 전원회의(2010. 1. 14)에서 의결한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'에 해당됨.

나. 의결사항

1) SK텔레콤(주)와 SK브로드밴드(주) 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에 관한 건 - (2010-73(서)-298)

○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4조제2항에 의거, SK텔레콤(주)의 SK텔레콤(주)와 SK브로드밴드(주) 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인가하기로 의결함.

○ 주요 내용

① 인가내용

- SK텔레콤(주)와 SK브로드밴드(주) 양사 가입자 간 MMS(Multimedia Message Service, 대용량문자서비스) 제공을 위한 상호접속 협정

② 협정의 주요 내용

- 접속망 구성

· 기존 협정('07. 1월)에 의해 연결된 상호접속망을 활용하여 MMS를 추가로 제공

- 접속료 산정

· MMS 접속통화료는 발신사업자가 착신사업자에게 상호 통화량을 산정하여 지불하며, 접속통화요율은 1)인터넷전화 착신시 9원/건(장문), 56원/건(멀티미디어) 2)이동전화 착신시 15원/건(장문), 89원/건(멀티미디어)을 지급기로 사업자간 협의

※ 본건 MMS의 접속통화요율은 사업자 간 협의 하에 산정토록 되어 있음(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고시 제7조)

2)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건 - (주)사회안전방송 등 2개사 - (2010-73(서)-299)

○ 「방송법」 제9조제5항에 의거, (주)사회안전방송 등 2개사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.

○ 주요 내용

< (주)사회안전방송 등록 내용 >

채널명	방송분야 (방송유형)	대표자	최다액출자자 (지분율)	납입자본금 (실질자본금)
세이프TV (SafeTV)	생활정보 (텔레비전)	김동순	이용원 (100%)	10억원 (9.9억원)

< (주)케이엠에이치 등록 내용 >

채널명	방송분야 (방송유형)	대표자	최다액출자자 (지분율)	납입자본금 (실질자본금)
디원플러스 (D.one+)	드라마, 버라이어티쇼 (텔레비전)	윤인모 한찬수	최상주외 3 (33.56%)	46.4억원 (49.8억원)

3) 「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」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0-73(서)-300)

- 기업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이 기업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*)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「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」(고시)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.

* K-IFRS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자본시장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한 회계기준(IFRS: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)을 무수정 도입한 것으로, '11년부터 상장사 적용

○ 주요 내용

① 자산의 평가

- 사업자별 원가의 객관적 비교를 위해 유형자산 재평가는 K-IFRS와 달리 금지됨을 명시(안 제7조)

② 감가상각 방법

- K-IFRS와 달리 현행 감가상각방식을 유지하고, 무형자산의 내용연수(20년이하)를 고시에 명시(안 제8조)

③ 기타

- 현행 개별재무제표 방식을 유지함을 명시(안 제2조)
- K-IFRS를 반영하여 '대차대조표' 명칭을 '재무상태표'로 변경(안 제42조 이하)

4)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한 행정규정 개정안 일괄개정에 관한 건 - (2010-73(서)-301)

- 지나치게 세분화된 유사 민원사무를 통·폐합하고,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등 민원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행정규정 개정안(3건*)을 원안대로 의결함.

* 「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」 일부개정안
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」 일부개정안
「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」 일부개정안

○ 주요 내용

- ① '위치정보사업허가' 및 '위치정보사업변경'을 '위치정보사업(변경)허가'로 하는 등 27건의 민원사무를 13건으로 통·폐합함
- ② '전송선로설비이용약관(변경)신고' 등 민원사무 15건은 2부 이상 제출했던 동일 서류를 1부로 감축함
- ③ '전송망등록(변경)사업' 등 16건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'법인 등기부등본' 등을 제출하지 않도록 함
- ④ '방송채널변경사업' 등 10건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
- ⑤ 방송사업 재허가·재승인 유효기간 변경(3년→5년) 등은 상위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함